

『호모 미그란스』 투고 규정

2012년 6월 14일 개정

제1조: 원고의 투고

1.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.
2. 투고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.
3.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, ‘아래아 한글’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.
4.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,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1) 투고 원고 매수가 200자 원고지 200매를 넘을 경우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가불가능하다.
 - 2) 서평의 경우, 각주를 포함한 투고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에 3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조: 원고의 작성

1.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. 장 제목은 로마 숫자(I, II, III...)로 하며, 절 제목은 숫자(1,2,3)으로 한다.
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.
3.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.
 - 1)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()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.
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.
(예) 인명 - 에릭 홉스봄(Eric Hobsbaum)
(예) 책명 - 『사회과학사전(Dictionary of Social Sciences)』
 - 2)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.
 - (1) “ ” : 인용
(예) 그는 “진리를 설명해야 한다”고 주장한다.
 - (2) ‘ ’ : 강조 또는 재인용
(예) “르네상스와 ‘시민적 휴머니즘’”; ‘프랑스 사노당(FTSF)’
 - (3) 『 』 (전각기호) : 문헌, 저서, 신문 등
(예) 홍길동, 『서양문화사』
 - (4) □ □ (전각기호) : 논문

- (예) 홍길동, □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□
 (5) · (가운데 점) : 동일 사항의 나열
 (예) 정치·사회·경제·문화에 걸쳐
 (6) 진한 글씨 : 인용문에서의 강조
 (예)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, 평등, 우애이다.
 (7) 영화명, 미술작품명 등은 < > 로 표기한다.
 3)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4.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.

* 기호 √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.

- 1)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(編) 또는 ed.를 기입한다. 영어 및 프랑스어, 독일어,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은 제목에서 전치사, 관사,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.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.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., 대신 dir., hg., 을 쓸 수 있다. 부제가 있는 경우 : (콜론)을 사용한다(예3).

- 2) 서양어, 동양어, 한국어 모두 인용 문헌의 페이지 수는 표기하지 않는다. (예1) 홍길동√편,√『서양사강의』√(서울:√길동출판사,√1992),√12.

(예2) 홍길동,√□그리스인의√역사서술□,√허균√편,√『서양고대사√강의』(서울:√길동출판사,√1996),√12.

(예3) Gary√Kates,√ed.,√The√French√Revolution:√Recent√Debates√and√New√Controversies

√(London√&√New√York:√Routledge,√1998),√12.

(예4) J.√S.√Morrill,√”The√British√Patriarchy?√Ecclesiastical√Imperialism√under√the√Early√Stuarts,”√A.√Fletcher√&√P.√Roberts,√eds.,√Religion,√Culture,√and√Society√in√Early√Britain√(Cambridge:√Cambridge√University√Press,√1994),√12.

- 3) 한국어, 일본어,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□ □(반각기호)안에, 단행본은 『 』(반각기호)안에 제목을 넣는다.

(예1) 홍길동,√□호레이쇼√얼저와√성공신화□,√『미국사연구』,√4집√(1996),√12.

홍길동,√『프랑스√근대사√연구』√(서울:√길동출판사,√1998),√12.

(예2) 木畑洋一,√『帝□のたそがれ:√冷□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』√(東京:√東京大□出版□,√1996年).

(예3) 草光俊男,√「東アジアの構築:√表象空間の□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」,√『史□□誌』,√3□√(2004).

- 4) 영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(西洋語)로 된 논문은 ““(한글타자용)안에 제목을 써넣고,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.

5) 단행본의 경우 이름, 성, 책명(이탤릭), 권수(있는 경우), (출판지명: 출판사, 연도)의 순으로 기입한다.

(예1) Paul√Tillich,√Systematic√Theology,√3√vols.√(Chicago:√Chicago√University√Press,√1951),√9.

(예2) Michel√Vovelle,√La√Révolution√contre√l'Église-De√la√Raison√à√l'Être√Suprême√(Paris:√Galli-

- mard,√1988),√12-13.
- (예3)Michael√Schneider,√Streit√um√Arbeitszeit.√Geschichte√des√Kampfes√um√Arbeitszeitverkürzung√in√Deutschland√(Köln:√S uhrkamp,√1984),√15.
- 6) 정기 간행물의 경우, 이름, 성, “논문제목”, 잡지명(이탤릭), 권수 (연 도),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.
- (예1)James√Eayrs,√”The√Political√Ideas√of√the√English√Agrar ians”,√Canadian√Journal√of√Economic√and√Political√Scien ce,√18-3(1952),√287.
- (예2)Sergey√Bianchi,√”Les√Curé√Rouges√et√la√Révolution√Fr ançaise.”√Annales√Historiques√de√la√Révolution√Françai se,√249(1982),√364.
- (예3)J.√Kocka,√”Zurück√zur√Erzählung?√Plädoyer√für√Historische √Argumentation,” √Geschichte√und√Gesellschaft,√10(1984),√395-408. z
- 7)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
- (1) 바로 앞의 것인 경우
한국어, 일본어, 중국어 등의 경우: ‘같은 책’ 또는 ‘같은 논문’.
- (예) 홍길동,√『서양√문화사』√(서울:√길동출판사,√1998),√13. - 홍길 동,√같은√책,√25. 서양어(西洋語)의 경우: Ibid 로 표시한다.
- (예)William√Sewell,√Work√and√Revolution√in√France:√The√Langu age√of√Labor √from√the√Old√Regime√to√1848√(Cambridge:√Cambridge√Univers ity√Press,√1980), √120.
- Ibid.
- Ibid.,√130.
- (2)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
op. cit., loc. cit., 혹은 ‘앞의 책’, ‘전게서’, ‘상게서’라는 표현을 쓰지 않 는다.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한 다.
- (예1) 홍길동,√『서양의√지적√전통』√(서울:√길동출판사,√1998),√13. → 홍길동,√『서양의√지적√전통』,√15.
- (예2)William√Sewell,√Work√and√Revolution√in√France:√The√Lang uage√of√Labor√ from√the√Old√Regime√to√1848√(Cambridge:√Cambridge√Univers ity√Press,√1980) ,√120.
→ Sewell,√Work√and√Revolution√in√France,√122.
- 8) 번역서의 경우, 역자, 번역서명,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 하지 않는다.
- (예) E.√J.√Hobsbawm,√강명세√역,√『1780년√이후의√민족과√민족주 의』√(서울:√길동출판사,√1994), 30.
- 9)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,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.
- (예) <http://www.answers.com/topic/multiculturalism> (검색일: 2009 년 11월 14일)

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제4조 본 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